

## 리·통새마을부녀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리·통 새마을부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리·통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부녀회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교육 및 홍보활동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관내 리·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2002. 2. 22) (개정 2018. 2. 22)

②임기가 만료된 리·통회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본회의 회원이 된다.(신설 2011. 2. 24)

**제7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거주지 이전(관외)
2. 사망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회칙 및 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선출권, 피선거권, 각종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 회칙과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2)

###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운영위원 약간인
5. 감사 1인

②감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본회의 회장·부회장·운영위원·감사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읍·면·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잔임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23)

③임원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 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2002. 2. 22)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각급 동일기관 부녀회장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낙선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타 지역 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4. 3)

⑥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어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신설 2013. 4. 3)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의 결정은 경선 투표의 경우 득표순 회장이 지명할 경우 지명순 기타의 경우 연령순으로 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각부의 부장이 된다.

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3.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 회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6.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 제 4 장 기 관

**제15조(구성)** 본회에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2002. 2. 22)

**제16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장,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3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 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제17조 제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본회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개최일시·장소
3. 출석 및 결석대의원수
4. 보고사항
5. 의결사항
6. 회의에서 실시한 선거의 전달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2인이 서명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 3. 12)
4. 기타 부녀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2002. 2. 22)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신설 2008. 3. 12)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삭제 2002. 2. 22)

**제27조** (삭제 2008. 3. 12)

## 제 5 장 재 정

**제28조(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29조(기금관리운영위원회)** ①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 한다.(2002. 2. 22)

③본 위원회는 본회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02. 2. 22)

④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2. 2. 22)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3. 기금의 과실금
4. 기타 수익금

**제32조(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등)** ①본회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 회장은 매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사의 경우 감사는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 칙

**제33조(지도·감독)** ①본회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 받아 시행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새마을부녀회 및 시·군·구, 시·도, 중앙연합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 4. 1)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본 회칙 제11조 제2항(임원의 임기)의 시행일은 1994년1월1일부터로 한다.

②신도시, 개발지역, 분구 등의 신설된 조직의 임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다음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될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차기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